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343 | 2026. 8. 3. (2026. 7. 27. ~ 2026. 8. 2.)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장화재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산업현장의 안전을 강화하여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공장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이 기업·산업의 경쟁력이 되는 제조 생태계 혁신을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이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진단은 형벌 규정 11,165개 전수조사, 전체 형벌 체계를 아우르는 ‘형벌 합리화 종합기준’ 수립, 발굴과제 개정 등을 전담할 계획입니다.

【입법(행정)예고】

<국방부>는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특별법인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저공해조치 후 성능유지 확인 미이행, 변경신고 미이행·거짓 신고 후 인증시험 업무를 대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구체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배달플랫폼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매출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비용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수수료의 산정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등 10인**」

다차원적 불평등을 체계적으로 측정·평가하고, 범부처 협력을 바탕으로 통합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기본법인 「**불평등 완화 기본법안(정태호의원 등 15인)**」,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의 표시 방식을 인공지능개발사업자와 인공지능이용사업자로 구분하여 인공지능개발사업자에 대해서는 국제적 기술표준과 상호 운용되는 기계판독 방식으로, 인공지능이용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1인)**」,

법률의 제명을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법」으로 변경하고, 제조인공지능전환 얼라이언스의 구성·운영과 산업데이터 라이브러리의 구축, 제조현장의 암묵지데이터 활용, 산업인공지능전환 선도사업에 대한 연구개발 및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산업인공지능제품의 실증·성능인증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1인)**」,

기업의 필수의료·교육·돌봄·교통·주거 등 생활 인프라에 대한 투자, 지역 협력업체와의 거래 등 지역사회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역상생지수를 도입하고, 평가 결과를 구간별로 구분하여 우수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산업도시의 지역상생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전은수의원 등 12인)**」,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지역별로 소비자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용기등의 반환 인프라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1인)**」,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원칙을 위반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2인)**」,

부동산서비스사업자가 통계, 지표 또는 전망 등의 정보를 제공할 경우 조사 대상·기준·범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을 함께 제시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0인)**」,

건설기계의 연식 및 건설기계조종사의 연령과 관련된 부당한 제한행위를 금지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균의원 등 13인)**」,

노후 PC공법이 적용된 분당·일산·평촌 등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3인)**」,

택배서비스종사자 작업시간의 합리적인 제도적 기준을 확립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택배사업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종사자는 물론 심야배송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종사자에 대해 고용·산재보험료의 사업자 부담을 의무화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8인)**」,

주거재생혁신지구 후보지의 선정·변경·철회 및 공고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고 현물보상의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전환하는 등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0인)**」,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산업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속한 조성이 필요한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대규모 투자계획이 선제적으로 확보된 사업에 한정하여 예비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산업단지 지정 이전에도 토지 등의 협의취득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엄태영의원 등 17인)**」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교육위>, <성평등가족위>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간사를 선임할 예정입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공장화재 안전 강화 방안」 발표(관계부처 합동) 7
-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공식 출범(법제처) 8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재정경제부) 10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고용노동부) 10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11
-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예산처) 1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금융위원회) 11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국방부) 13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기후에너지환경부) 13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기후에너지환경부) 13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4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4인) 15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0인) 15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0인) 15
- 불평등 완화 기본법안(정태호의원 등 15인) 1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16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1인) 1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의원 등 12인) 17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의원 등 11인) 18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2인) 18
-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의원 등 11인) 19
- 산업도시의 지역상생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전은수의의원 등 12인) 19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3인) 20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의원 등 16인) 20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의원 등 12인) 21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22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1인)..... 22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1인)..... 22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2인)..... 23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0인)..... 23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의원 등 11인)..... 23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준의원 등 10인)..... 24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4인)..... 24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균의원 등 13인)..... 25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3인)..... 25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8인)..... 26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0인)..... 27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염태영의원 등 17인)..... 27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42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바로가기](#)

- [조세] 상호 동시취득의 경우 상법상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취득 금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설시하여 과세처분을 취소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 (승소사례)
- [기업지배구조/경영권 분쟁] 스튜어드십 코드, '선언'에서 '점검'으로 — 10년 만의 개정과 실무 대응
- [동남아시아] 싱가포르 Take-over Code 주요 개정 내용
- [금융] 월간 기업·금융분쟁 뉴스레터
- [기업지배구조/경영권 분쟁] 전자주주총회 상법 시행령 공포 - 입법예고안에서 달라진 점과 상장회사의 준비사항
- [방송통신(TMT)] AI 데이터센터 국가 전략 산업화를 위한 'AI 데이터센터 얼라이언스' 본격 가동
- [금융]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 (2026. 7. 15. - 2026. 7. 28.)
- [건설/부동산] 월간 건설부동산 뉴스레터
- [건설/부동산]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불허가처분 등을 취소하는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 [유라시아] 러시아의 대(對)외국인 및 외국기업 규제 강화에 따른 유의사항 및 대응 전략: 예금 반환 제한, 전략적 투자 통제 확대 및 고급전문인력(HQS) 고용 요건 개정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공장화재 안전 강화 방안」 발표 - 전국 19만동+α 공장·창고 대상 범정부 합동 대규모 종합 실태조사 ('26.9~'27.12) 실시 - 위험물 시설 불연 외장재 의무화 등 화재 안전기준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 - 안전투자 보조·대출 패키지 신설, 보험료 할인 등 안전투자 인센티브 확대 -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의무화, 집중신고기간 운영, 신고포상금 확대 등 안전관리 강화	2026-07-31
---------	---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장화재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음

그동안의 압축성장 과정에서 제조현장 내 안전기준 미흡, 안전투자 부진 등 구조적 문제가 누적되며, 대규모 인명 피해를 포함한 공장 화재사고가 이어지고 있음. 공장화재 등 산업재해는 개별기업의 손실에 국한되지 않고 공급망·고용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함. 이에 정부는 산업현장의 안전을 강화하여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공장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이 기업·산업의 경쟁력이 되는 제조 생태계 혁신을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힘

① 대규모 화재안전 실태조사 실시

화재 위험 우려가 있는 전국 19만동+α 공장·창고를 대상으로 범정부 대규모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함. 지난 6월 17일부터 한 달여간 실시한 시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화재위험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본조사를 진행 ('26.9~'27.12). 소방서, 지방정부 등 기존 인력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 및 청년인력을 함께 활용하여 건축·소방·안전 등 화재 취약성 및 위법 현황 전반을 조사.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불법증축 등 위반사항은 즉시 개선 조치하고, 실태조사 결과는 전산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임

② 화재 안전기준 일제 정비

건축·소방·위험물 등 화재 안전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 위험물 시설 대상으로 불연 외장재를 의무화(現 준불연 외장재 사용, ~'26.12)하고, 지능형 화재감지기 설치 의무화(現 일반감지기 설치 의무화, ~'26.12),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확대(~'26.12) 등 소방시설 기준도 강화. 기술역량과 장비 등을 갖춘 점검업자가 위험물 점검을 수행하는 위험물시설 전문 점검업을 도입(~'28년)하는 등 위험물 안전관리도 강화할 계획

③ 안전투자 인센티브 확대

강화된 안전기준에 맞춰 기업의 안전투자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금융·세제 등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확대. 먼저, 안전투자 촉진 화재제로 보조·대출 패키지를 신설한다. 중소·중견기업의 화재·폭발 예방 장비·품목 구매 등을 지원하는 재정지원(보조) 사업을 5년간 0.2조원 규모로 신설하고, 5년간 총 1.25조원 규모의 가칭화재제로·안전투자 대출 프로그램도 신설. 고위험 사업장 중심으로 자동확산소화기를 단계적으로 보급('27~'31년간 약 2만개소)하고, AI 기반 위험 조기경보 등 화재예방 R&D도 지원할 계획

④ 안전관리 강화

선제적 화재 예방·방지에 효과적인 안전 관리체계도 마련. 건축물 사후검사제도를 도입하여 사용승인 이후 일정기간 경과 시 허가권자가 위반여부를 재확인토록 하고, 이행강제금도 반복부과를 의무화(現 재량)하는 등 실효성을 강화. 1차 본조사('26.9~12월)와 연계해 안전신문고에 공장화재 예방(사업장 안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한 우수 신고에 대해 신고포상금 지급 규모를 대폭 상향. 내부 공익신고자의 신고에 따라 과징금·벌금 등이 부과·환수된 경우 과징금·벌금 등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공익신고장려기금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

법제처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공식 출범

- '형벌 합리화 종합기준' 및 '2개년 로드맵' 연내 마련·발표
- 형벌 규정 11,165개 전수조사, 합리화 종합기준 수립, 발
굴과제 일괄 개정 전담 추진

2026-07-30

법제처는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이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행정형벌 합리화’는 경제형벌을 포함한 전체 행정형벌을 위법행위의 경중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되며, 추진단은 법제처·재정경제부·법무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등의 관계 기관 공무원과 연구원 등 총 40명 내외로 구성됨

추진단은 앞으로 2년 동안 국민과 기업에 부담이 되는 과도한 행정형벌은 완화하되 위법행위에 대한 금전적 책임은 강화하고,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할 범죄에는 엄정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형벌 규정을 정비함. 이를 위해 ▲형벌 규정 11,165개 전수조사, ▲전체 형벌 체계를 아우르는 ‘형벌 합리화 종합기준’ 수립, ▲발굴과제 개정 등을 전담할 계획임

이러한 형벌 합리화가 추진되면 범죄의 경중과 책임에 맞는 공정한 형벌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형벌 규정 정비로 불필요한 사회적·행정적 비용을 줄여 국민과 기업의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등 국가경쟁력과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이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계·법조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 국민과 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상시 발굴할 예정임

법제처는 형벌 조문을 단일한 기준에 맞춰 획일적으로 개정하는 방식이 아닌, 규정 하나하나의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추진단이 설립되었다고 강조하면서 형벌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법률 간 형벌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규제와 법 집행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임으로써,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면서 추진단 출범 2년 내에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형벌 합리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음

한편, 추진단은 출범 즉시 중요도와 파급력을 고려하여 선정한 약 1,200개 형벌 규정(전체의 10% 규모)의 선행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형벌 합리화 종합기준’과 ‘2개년 로드맵’을 올해 안에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임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시행일자
재정경제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6-07-31 시행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초정밀 유정압 선반, 압출기 및 시편(試片) 제조기 등을 추가하고, 종전의 감면 대상이었던 웨이퍼(wafer), 액압식 프레스 및 사출 성형기 등은 제외하여 총 22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07-28 시행
-----------	---------------------	---------------

연구개발성과의 무료 교부 및 열람 등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가 연구개발성과를 기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개정(법률 제21421호, 2026. 3. 10. 공포, 9. 11. 시행)됨에 따라,

기탁할 수 있는 연구개발성과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제도를 개편하고, 비영리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대한 기술료 사용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료의 용도별 사용비율 등 그 사용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08-01 시행
-------	-------------------	---------------

기업 등으로 하여금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도록 하고,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추천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21374호, 2026. 2. 19. 공포, 2026. 8. 1., 2027. 1. 1. 및 2028. 1. 1. 시행)됨에 따라,

안전보건 현황의 공시대상 사업주를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거나 연간 건설공사 금액이 1천200억원 이상인 사업주로 정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과 관련된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에 화재·폭발 또는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원인조사가 필요한 사업장의 사업주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사업주가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화재·폭발 또는 붕괴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6-07-30 시행

관광숙박시설 중 4성급 이상의 호텔, 가족호텔, 휴양 콘도미니엄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를 하향 조정하여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대규모점포와 같은 기준을 적용했던 전통시장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를 소매시장 기준으로 낮춰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중고자동차 전시시설을 건물 내부에 둔 중고자동차 매매장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를 실제 교통유발량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예산처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07-31 시행

연구개발사업의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사업의 총사업비 등을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재정법」이 개정(법률 제21341호, 2026. 2. 10. 공포, 8. 11. 시행)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예산안 첨부서류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전략 및 재정구조혁신 방안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부처 간 협의·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자문기구인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조정을 위한 재정운용전략협의회로 확대·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07-28 시행

금융투자업자는 파생상품 등 일정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는 투자자 등급별로 차등화된 투자권유준칙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24호, 2026.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해당 투자권유준칙 마련 대상인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이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통한 자금조달 등을 할 때 신고서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의 제출 대상이 되는 금액 기준을 상향하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려는 경우 해당 증권의 발행인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그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국방부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2026.07.29. ~2026.09.07.

'25. 11월 대한민국과 미국은 한미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Joint Fact Sheet)를 통해 미국이 우리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핵연료 조달 방안에 대해 양국이 긴밀히 협의하기로 하였음. 이에 '26. 5월 국방부는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 계기에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국가 역량을 총결집한 국가전략사업으로써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추진해 나갈 것을 공표함

핵추진잠수함은 무기체계와 원자력이 결합된 우리나라 최초사례로서, 방위사업 및 원자력 안전관리 등 여러 법률에 걸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특성으로 인해 현행 법령체계로는 사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

※ 문의처 : [국방부 핵추진잠수함획득추진팀 \(전화: 02-748-5667\)](tel:02-748-5667)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7.29. ~2026.09.08.
----------	---------------------------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에 대한 검사기준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 시 제재를 보완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26.6.9. 공포)됨에 따라, 개정법률 제때 시행 및 기타 제도 개선을 위하여 하위법령인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저공해조치 후 성능유지 확인 미이행, 변경신고 미이행·거짓 신고 후 인증시험 업무를 대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구체화 (안 별표15)

※ 문의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 \(전화: 044-201-6933, 팩스: 044-201-6934\)](tel:044-201-6933)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07.29. ~2026.09.08.
----------	----------------------------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에 대한 검사기준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 시 제재를 보완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26.6.9. 공포)됨에 따라, 개정법을 제때 시행 및 기타 제도 개선을 위하여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 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개조 또는 교체된 저공해엔진이 설치된 자동차의 등록 말소 시 저공해엔진의 반납대상 부품(정화용촉매) 구체화 (안 제79조의5)
- ② 저공해조치 자동차에 대한 성능유지 확인(15일 이내) 명령 및 배출가스 정기·정밀검사 면제기간(3년→1년 6개월~2년) 조정 (안 제82조의3)
- ③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부착 이후 성능유지, 저감효율 확인검사 및 수시검사 주체를 인증 주체와 맞춰 자구 정비 (안 제82조의5, 안 제82조의8, 안 제82조의10, 안 제82조의11)
- ④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 대행업무 집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 구체화 (안 제82조의12, 안 제82조의13, 안 별표21의3)
- ⑤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의 금지행위별 행정처분 기준 신설 (안 별표36)

※ 문의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mailto:기후에너지환경부_교통환경과) (전화: 044-201-6933, 팩스: 044-201-6934)

국토교통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7.31.
~2026.09.09.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라 교육청에 등록되는 대안교육기관의 건축물 용도가 부재한 상황이며, 여러 용도의 건축물에 산재하여 운영됨에 따른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자 세부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고,

각종 국가안보를 위해 설치, 운영되는 건축물도 국방·군사시설의 세부 용도에 포함하여 설계공모, 각종 인증 및 평가 적용 등을 배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기본법에 따른 국가디자인 시범사업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업구역을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mailto:국토교통부_건축정책과) (전화: 044-201-3757, 팩스: 044-201-5574)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무위원회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4인)	2026-07-27 발의
현행법은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금융서비스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최초 혁신 서비스 지정 이후에도 동일·유사 서비스의 샌드박스 진입이 관행적으로 계속되어 초기 스타트업이 경쟁압력에 노출되는 등 혁신 서비스의 성장을 유도하는 전략적 지원체계가 미흡하고, 혁신 서비스 지정 이후 서비스 출시가 지연되거나 지정일로부터 장기간이 지나도록 서비스가 개시되지 아니하는 사례가 누적되고 있음에도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혁신성 보호가 필요한 유망 서비스에 대하여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시점부터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하여 초기 성장기반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서비스 운영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금융혁신을 고도화하고자 함 (안 제7조제1항제8호 신설 및 안 제23조 개정)		
정무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0인)	2026-07-28 발의
최근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온라인 배달플랫폼을 통한 배달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그 대상도 식료품, 화장품, 생필품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음. 덕분에 소비자의 편익이 증가하였지만, 배달플랫폼에 입점하여 배달상품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개 및 결제수수료, 광고비 등의 비용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배달플랫폼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매출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비용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수수료의 산정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세우는 데 기여하고자 함 (안 제20조의6 신설 및 제32조)		
정무위원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0인)	2026-07-28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 대부 광고나 개인정보를 활용한 불법 추심 게시물을 발견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심의를 거쳐 삭제 등의 조치를 하게 됨. 그러나 현행 방식으로는 금융당국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차단·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직접 요청할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불법 대부 광고 및 불법 추심 게시물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가 직접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대부 광고 또는 개인정보를 이용한 불법 추심 게시물에 대하여 차단·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사금융으로부터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9조의10 신설)

정무위원회

불평등 완화 기본법안(정태호의원 등 15인)

2026-07-29 발의

최근 우리 사회는 소득·자산·교육·건강·주거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불평등은 상호 연계·누적되면서 다차원적 구조로 고착화되고 있음. 특히 각 영역의 불평등은 세대 간 이전과 사회경제적 지위의 재생산으로 이어져 사회 이동성을 저해하고,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 통합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반면, 현행 제도는 소득·자산·교육·건강·주거 등 개별 영역별 법률에 따라 분산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다차원적 불평등을 종합적으로 관리·조정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통합적 추진체계가 미흡한 실정임. 또한 불평등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측정·분석할 수 있는 지표 및 데이터 기반 정책 체계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다차원적 불평등을 체계적으로 측정·평가하고, 범부처 협력을 바탕으로 통합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구축하는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불평등을 완화하고 국민의 실질적 기회평등을 보장하며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2026-07-30 발의

배터리 산업은 미래차, 인공지능(AI), 로봇, 에너지저장장치(ESS), 방위산업 등 미래 첨단산업 전반의 핵심 기반 기술로서, 국내 생산기반과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은 기업 지원을 넘어 국가 경제안보를 위한 필수 과제가 되고 있음. 이러한 배터리 산업을 둘러싼 국제 공급망 재편과 국가 간 산업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생산기반이 약화될 경우 국가 경쟁력과 경제안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배터리 산업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적인 국내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현재 배터리 산업은 본격적인 성장을 앞두고 대규모 시설투자과 연구개발이 선행되어 상당수 기업이 일시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는 흑자기업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지원이 가장 필요한 기업이 오히려 세제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이는 공제율의 문제가 아니라 지원 방식의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직전 3개 사업연도 이상 연속하여 결손이 발생한 국가전략기술 관련 사업 영위 기업에 대하여 국가전략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의 미공제금액을 환급하거나 그 환급을 받을 권리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환급받은 금액을 국가전략기술 관련 국내 시설투자 또는 연구·인력개발에 재투자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25조 신설)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1인)

2026-07-27 발의

현행법은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의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여 인공지능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생성형 인공지능 산업에서는 인공지능 모델·API·생성엔진을 개발·제공하는 사업자와, 이를 활용하여 앱·플랫폼·콘텐츠 서비스 등 최종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역할과 책임 범위가 상이함. 그럼에도 현행법은 양자를 구분하지 않고 표시의무를 일률 부과하여, 각 사업자가 어떤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이에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의 표시 방식을 인공지능개발사업자와 인공지능이용사업자로 구분하여, 인공지능개발사업자에 대해서는 국제적 기술표준과 상호 운용되는 기계판독 방식으로, 인공지능이용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인공지능 개발·이용 단계별 역할과 책임에 부합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현행 일률적 규제에 따른 정책적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중복 개발비용, 계약상 책임 불명확성 및 표시의무 위반에 따른 법적 리스크 등 규제비용을 줄이는 한편, 인공지능 투명성 규율의 실효성과 국제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31조제2항)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의원 등 12인)

2026-07-30 발의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허위조작정보 규제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면서,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 혐오표현 규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조항을 신설·강화했음. 그러나 해당 법률은 ‘허위조작정보’와 ‘혐오표현’의 개념이 모호하고 광범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자의적으로 검열을 남용할 우려가 크고, 동일한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처벌, 과징금을 중복 부과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어 과잉규제 및 이중처벌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 혐오표현 규제, 징벌적 손해배상,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고·조치 의무 등 허위조작정보 관련 핵심 규정들을 삭제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1인)

2026-07-31 발의

최근 국제회의, 대형 축제, 스포츠·공연 행사 및 관광성수기 등을 중심으로 일부 관광숙박업소가 객실요금을 과도하게 인상하거나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고가로 재판매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관광호텔업 등 관광숙박업은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시설개선자금 지원 등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자의 과도한 요금 인상 행위로 인하여 국내외 관광객의 불만이 증가하고 국가 관광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관광숙박업자의 숙박요금 공개 및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부당한 숙박요금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사업자에 대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제한, 융자 회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관광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18조의3부터 제18조의8까지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2인)

2026-07-27 발의

우리 경제의 저성장 흐름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력과 혁신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이 자금·인력·판로 등의 성장 제약을 넘어 중견기업 이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성장사다리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경영전략 수립, 사업화, 정책 연계 및 민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도약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도약기업의 선정과 지원, 선정 취소 등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사업의 안정적·지속적인 추진과 체계적인 성과관리에 한계가 있으며, 도약기업의 성장 현황과 지원 성과 및 경영상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업의 수요와 성장 단계에 부합하는 정책을 설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도약기업의 선정 및 선정 취소, 도약 지원사업의 추진과 실태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체계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의 규모 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촉진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선순환적 기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1인)

2026-07-27 발의

최근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노동생산성 정체 등으로 우리 제조업의 성장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은 인공지능을 제조공정과 제품·서비스 전반에 적용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와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세계적 수준의 제조기업과 생산기술, 제조현장에서 축적된 양질의 데이터 등 산업인공지능전환을 선도할 수 있는 강점을 보유하고 있음.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제조공정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자율제조·인공지능로봇 등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제조기업, 인공지능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역량을 결집하는 협력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산업데이터의 생성·활용과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제조 인공지능 전환을 위한 기업 간 협업, 제조현장의 숙련지식과 산업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관리, 대규모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집중 지원, 산업인공지능제품의 실증·인증 및 안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뒷받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법률의 제명을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법」으로 변경하고, 제조인공지능전환 얼라이언스의 구성·운영과 산업데이터 라이브러리의 구축, 제조현장의 암묵지데이터 활용, 산업인공지능전환 선도사업에 대한 연구개발 및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산업인공지능제품의 실증·성능인증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도시의 지역상생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전은수의원 등 12인)

2026-07-28 발의

산업도시는 국가 경제성장과 수출 확대,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핵심 거점으로 기능해 왔음. 특히 최근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을 통해 권역별 성장거점과 지역별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지역주도 성장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앞으로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산업도시의 조성 확대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산업도시의 외형적 성장에 비해 교통·주거·교육·의료·돌봄 등 도시 생활 인프라의 확충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소아·분만·응급의료 등 필수의료와 교육·생활 인프라의 확충이 산업 및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산업도시의 외형적 성장과 주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사이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반면 현행 기업 지원 제도는 지방투자와 기업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금융 지원 및 규제 특례 등에 중점을 두고 있어, 산업도시에서 창출된 경제적 성과를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과 지역공동체의 발전으로 연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기업의 필수의료·교육·돌봄·교통·주거 등 생활 인프라에 대한 투자, 지역 협력업체와의 거래 등 지역사회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역상생지수를 도입하고, 평가 결과를 구간별로 구분하여 우수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산업과 산업도시의 성장 성과가 주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환류되는 상생 구조를 마련하고, 지역인재의 정착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며, 지속가능한 산업도시 조성 및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3인)

2026-07-30 발의

현행법은 국가안전보장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고시하고, 그 유출·침해행위를 벌칙 규정의 구성요건으로 삼아 가중처벌하고 있음. 국가핵심기술의 지정과 해제는 기술의 범용화, 산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수시로 변경되는 구조임

그런데 대법원은 2022년 12월 22일 전원합의체 판결(2020도16420)에서 종래의 이른바 동기설을 폐기하고,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위임을 받은 법령·고시 등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그 변경의 이유를 따지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26조제4호가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음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기술의 범용화 등 단순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국가핵심기술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해당 기술이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 전에 행하여진 기술유출·침해행위에 대하여 면소 판결이 선고되거나 확정된 형의 집행이 면제될 수 있다는 해석의 여지가 발생함. 지정 해제는 장래를 향하여 관리 필요성이 소멸하였다는 판단일 뿐 과거 유출행위의 불법성에 대한 평가를 변경하는 것이 아님에도, 처벌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임

위 전원합의체 판결 역시 입법자가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국가핵심기술의 지정 변경·해제 등의 경우에도 그 전에 행하여진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 당시의 규정에 따라 벌칙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례를 명문화하고, 손해배상책임에도 영향이 없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의 공백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35조의2 및 제38조의2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6인)

2026-07-31 발의

반도체산업은 국가 핵심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전략산업인바, 미국, 일본, 중국 등 전세계 주요국의 경우 자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고 기술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규모 재정지원과 세제지원, 규제개선 및 인재 확보 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시스템반도체, 팹리스, 소재·부품·장비 및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는 주요 경쟁국과의 기술격차를 해소하고 새로운 경쟁우위를 확보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음. 특히 이러한 분야의 ‘반도체 기술’은 세대 전환 속도가 빠르고 연구개발의 적기를 놓칠 경우, 시장 선점 기회를 회복하기 어려워 연구개발 단계에서 고도의 집중과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근무지역에 관계없이 반도체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연구개발 등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근로소득 수준, 업무 수행방법 등을 고려해 별도의 추가 근로 임금 지급과 건강권 보호 조치를 전제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 서면합의에 의하여 ‘기존 주 52시간 제약’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안 법률 제21337호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 신설)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2인)

2026-07-27 발의

전력 분야의 전력구매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이란 수요자인 기업과 공급자인 발전사업자간 맺는 장기의 계약으로,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입 안정성’이 확보되고, 기업 등의 전력구매자 입장에서는 장기계약으로 ‘전력 비용 예측’과 ‘비용 절감’이 가능해짐과 동시에 전력의 ‘공급 안정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수단임. 하지만, 현행 「전기사업법」은 기업과 발전사업자 간의 PPA를 재생에너지 분야에만 한정하여 허용하고 있어, 기업 측의 에너지 선택권이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한전의 전력시장을 통해 전기를 공급받기에 요금이 비싸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최근 글로벌 산업계의 흐름을 보면,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대규모 전력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4시간 안정적으로 공급 가능한 무탄소 전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국내 산업계에서는 안정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갖춘 원자력발전을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원전 PPA 제도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원자력 발전은 ‘대표적인 무탄소 전원’으로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와 달리 기상여건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하며, 전력공급의 예측 가능성과 가격 경쟁력이 중요한 반도체·AI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점이 있음

이에 원자력 발전을 전력구매계약(PPA)의 대상에 포함하여 원전 PPA를 허용하는 한편, 첨단산업의 기업들에 대한 원전 PPA 지원에 따른 일정 비용을 국가가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첨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위한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반을 구축하는 동시에 전체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상쇄하고자 함 (안 제16조의6 신설)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2026-07-28 발의

현행법은 기후·생태계 변화를 유발하는 냉매의 배출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냉매회수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율하고 있음.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후·생태계 변화를 유발하지 않는 친환경냉매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기술 개발·보급에 대한 국가의 지원책은 없이 현재 단순히 배출되는 냉매를 감축하기 위한 단기적 관리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친환경냉매와 이를 사용하는 기기의 개발·보급에 필요한 지원 근거와 국가기관등의 우선활용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기술개발을 유인하고 지속가능한 대기환경을 보전하고자 함 (안 제76조의16 신설)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1인)

2026-07-29 발의

현행법은 용기·1회용 컵의 회수·재사용이나 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 시키도록 하고,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하여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비용기 반환 인프라가 소매점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소비자의 접근성 향상 등 비용기 반환 인프라의 체계적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지역별로 소비자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용기등의 반환 인프라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비용기 재활용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15조의2제7항 및 제8항 신설 등)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1인)

2026-07-29 발의

현행법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생물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국고보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그동안 축적된 생물자원 관련 정보를 활용한 생물다양성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가 미흡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과 기술개발 및 재정지원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생물다양성 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기술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물자원의 활용과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지원하려는 것임 (안 제7조제8호, 제27조제7호 및 제31조제5호 신설)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2인)

2026-07-30 발의

현행법은 차별적 처우 금지를 위하여 개별 법률상의 규율을 두고 있으나, 보편적 차원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근거는 명확하지 않아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격차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격차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

그런데 동일가치노동은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본질적으로 같은 가치의 노동으로서 동일임금이 지급되어야 함. 이 원칙이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정책 기반이 우선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모든 근로조건의 기본법인 「근로기준법」에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원칙을 위반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정책의 기반을 확립하고자 함 (안 제6조의2 신설 등)**

국토교통위원회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0인)

2026-07-27 발의

최근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서울 아파트 공급 물량 등 다양한 부동산 통계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민간 사업자들이 공급 물량 통계의 산정 기준이나 조사 대상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단편적인 수치나 사업장 목록만을 제공하고 있음. 이로 인해 공공기관 발표 수치와 민간 통계 사이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출처와 기준이 불명확한 정보가 시민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등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현행법상 부동산중개업이나 감정평가업과 달리 부동산정보제공업은 별도의 관리·의무 규정이 미흡하여 실효성 있는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부동산서비스사업자가 통계, 지표 또는 전망 등의 정보를 제공할 경우 조사 대상·기준·범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을 함께 제시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부동산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안 제23조의2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의원 등 11인)

2026-07-28 발의

최근 자동차의 전동화 양상, 소프트웨어 기반의 차량 제작 증가와 연계하여 자동차가 차로 유지, 변경 등을 지속적으로 제어하면서 운전자의 운전 조작을 보조하는 첨단화된 운전자 제어보조장치에 대한 기술개발과 논의가 확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운전자제어보조장치에 대한 정의나 제작·운행과 관련한 제도가 부재한 상황인 반면, UN 산하 자동차 국제기준 담당기구(WP.29)에서는 운전자의 운전 조작을 보조하여 자동차가 지속적으로 종방향 및 횡방향 주행을 제어할 수 있는 운전자제어보조장치 관련 국제기준을 마련하였음

이에 **운전자제어보조장치에 관한 국제기준을 우리나라 자동차 관리 법령에 적합한 방식으로 국제 조화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여, 국내에서도 해당 장치를 장착한 자동차를 운전자가 안전하면서도 편리하게 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회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준의원 등 10인)

2026-07-29 발의

현행법은 역세권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두고, 각종 인·허가등의 의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해제는 의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광역철도(GTX 등)는 대규모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노선의 경제성 확보를 위하여 기존 역사에 환승시설을 갖춘 복합역사를 조성하는 경우가 다수 있으나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에 속해 있어 별도의 해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역세권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이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별도의 도시·군관리계획 절차가 추가로 소요되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역사 혼잡도 개선을 위한 복합개발이 제약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수도권 내 광역철도 역세권에 한정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러한 특례에 상응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역세권개발구역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을 현행보다 상향하도록 함으로써 광역철도 역세권의 원활한 개발을 도모하는 동시에 개발이익이 철도시설 및 인근지역 인프라 확충에 충실히 환류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6조의2 신설 및 제25조제1항)

국토교통위원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4인)

2026-07-29 발의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보급을 촉진하고 충전시설 등 관련 기반시설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업에 자금지원과 연구·조사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충전시설의 안정적인 공급·운영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충전시설 관련 부품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흡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정보도 여러 기관과 시스템에 분산되어 체계적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관련 부품의 생산·공급·판매 및 개발·생산 등을 지원하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8조의2, 제12조의2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균의원 등 13인)

2026-07-29 발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건설현장에서는 사고발생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근거 없는 안전조치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현행 「건설기계관리법」은 등록검사, 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 수시검사 등 건설기계에 대한 안전검사를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건설기계조종사는 정기적성검사를 통해 조종능력에 대한 적합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 중임

그럼에도 건설현장에서는 상기 안전점검 및 적성검사 여부와는 상관없이 건설업자 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적으로 건설기계의 연식을 제한하고 건설기계조종사의 연령을 제한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 이는 국가가 시행하는 인증제도를 부정하는 행태로서,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필요 이상의 건설기계 구매비용을 부담시키고 추가 채용 인건비 발생을 유발하여 건설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식이 오래된 건설기계를 보유한 건설기계 임대사업자와 고령의 건설기계조종사들은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건설기계의 연식 및 건설기계조종사의 연령과 관련된 부당한 제한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안전과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업계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국토교통위원회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3인)

2026-07-30 발의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에는 1990년대 초 대량 주택공급 정책 과정에서 건설된 PC(Precast Concrete) 공법 아파트가 다수 분포하고 있음. 이들 공동주택은 준공 후 30년 이상이 지나면서 일반 노후 공동주택과는 구별되는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특히 부재 간 접합부의 균열, 누수, 철근부식, 배관 노후, 층간소음, 외벽 손상 등으로 입주민의 주거안전과 생활환경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제도는 이러한 PC공법 공동주택의 구조적 특수성과 재생 한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현행 안전진단 및 정비사업 추진체계는 일반적인 노후 공동주택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접합부 중심의 구조위해성, 리모델링의 기술적 한계, 구조안전과 직결된 주거환경 악화 문제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1기 신도시 정비정책은 동의율 등 행정적 기준에 상대적으로 치우쳐 있어, 실제로는 구조적 위험이 큰 PC공법 단지가 정비 우선순위에서 배제되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음. 그 결과 주민들은 장기간 누수, 배관 파열, 외벽 탈락, 소음 피해 등 위험한 환경에 방치될 가능성이 큼

이에 따라 노후 PC공법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어 PC공법 주택단지의 구조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26조제2항)

국토교통위원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8인)

2026-07-30 발의

최근 온라인 쇼핑의 보편화와 이커머스 산업의 고도화로 택배 서비스가 국민 생활의 필수적인 인프라로 자리 잡았으나, 이와 동시에 택배서비스종사자가 직면한 고강도 노동과 과로사 문제도 산업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주간 배송 종사자의 경우 일상적인 대량 물량 처리에 따른 높은 업무 강도와 누적되는 육체적 피로에 노출되어 있으며, 최근 급격히 확대된 심야·새벽배송 등 야간 배송 종사자의 경우 생체리듬 교란, 수면 부족, 야간 시야 제한 등이 더해져 신체적·정신적 건강상 부담과 안전사고 위험성이 더욱 심각한 특성이 있음. 이처럼 주·야간을 불문하고 가중되는 택배 분야 특유의 노동 환경으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하고 전반적인 과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본 개정안은 택배서비스종사자의 건강권 보장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작업시간의 합리적인 제도적 기준을 확립하고자 함.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택배사업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종사자는 물론, 심야배송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종사자에 대해 고용·산재보험료의 사업자 부담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택배산업 전반의 보편적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종사자의 실질적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생계 유지를 위한 과도한 장시간·심야 노동 유인을 근본적으로 완화하고자 함

국토교통위원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0인)

2026-07-30 발의

주거재생혁신지구는 빈집, 노후·불량건축물 등이 밀집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고 신규 주택공급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는 혁신지구로서, 실무상 지구 지정에 앞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사업 후보지를 선정·발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후보지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선정·변경·철회의 절차가 불명확하고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에도 주민의 의사에 따라 후보지 선정을 철회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또한 현행 제도는 투기수요 차단을 위하여 법률 제18313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에 따라 국회 의결일의 다음 날 이후 토지등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현물보상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전국 단일 기준일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그 이후 새로 발표되는 후보지에서 투기와 무관하게 토지등을 취득한 실수요자까지 현물보상에서 배제되고 무주택 실수요자나 전세사기피해자와 같이 보호 필요성이 큰 취득자에 대한 예외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임

한편 유사한 제도인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2025년 1월 같은 법 개정을 통하여 후보지 제도를 법제화하고 현물보상의 기준일을 구역별 후보지 선정일로 전환한 바 있어, 같은 문제 상황에 놓인 주거재생혁신지구에 대해서도 이에 상응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거재생혁신지구 후보지의 선정·변경·철회 및 공고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고 현물보상의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전환하는 한편, 무주택 실수요자와 전세사기피해자 등에 대한 예외적 현물보상 근거, 투기적 지분 분할 방식을 위한 권리산정 기준, 동의서 검인 제도 및 민간 주택건설사업자와의 공동시행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의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고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방지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엄태영의원 등 17인)

2026-07-30 발의

최근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국가 간 기술·산업 경쟁이 심화되면서, 첨단산업 생산거점을 신속하게 조성하여 글로벌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산업단지 지정과 동시에 사업 인정이 의제되고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예정된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지정 이전에는 토지 등의 협의매수에 착수할 수 없음. 이로 인해 토지 확보가 지연되고 산업단지 조성 기간이 장기화되어 급변하는 첨단산업 투자 수요에 적기에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산업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속한 조성이 필요한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대규모 투자계획이 선제적으로 확보된 사업에 한정하여 예비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산업단지 지정 이전에도 토지 등의 협의취득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단축하고 기업 투자와 산업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려는 것임

아울러 예비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지정 이전에 협의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하였으나, 산업단지 지정구역 변경 등 예비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없는 사유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구분		일시	내용
교육위	전체회의	8/4(화) 10:00	- 간사 선임의 건
성평등가족위	전체회의	8/3(월) 10:00	- 간사 선임의 건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8/3(월) 10:00	한·미 경제협력의 새 프레임: 정책 세미나	김태규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8/4(화) 10:00	영업이익 n% 성과급 논쟁으로 바라본 건강한 임금체계 개 편 방안	우재준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8/5(수) 10:00	경기도 중증외상 생존체계 고도화 방안	김윤·권철승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8/5(수) 14:00	수산기자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국회토론회	조승환 의원실	의원회관 7간담회의실
자료집 등	8/4(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026-15호(통권 제303호)	국회도서관	
	8/5(수)	「금주의 서평」 제2026-30호(통권 제789호)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42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7/27(월)	「Data+」 제2026-12호(통권 제36호)	국회도서관	
	7/29(수)	「금주의 서평」 제2026-29호(통권 제788호)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7/28(화)	조세	상호 동시취득의 경우 상법상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취득 금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실시하여 과세처분을 취소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 (승소사례)
7/28(화)	기업지배구조/경영권 분쟁	스튜어드십 코드, '선언'에서 '점검'으로 — 10년 만의 개정과 실무 대응
7/30(목)	동남아시아	싱가포르 Take-over Code 주요 개정 내용
7/30(목)	금융	월간 기업 · 금융분쟁 뉴스레터
7/30(목)	기업지배구조/경영권 분쟁	전자주주총회 상법 시행령 공포 – 입법예고안에서 달라진 점과 상장회사의 준비사항
7/31(금)	방송통신(TMT)	AI 데이터센터 국가 전략 산업화를 위한 ‘AI 데이터센터 얼라이언스’ 본격 가동
7/31(금)	금융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 (2026. 7. 15. - 2026. 7. 28.)
7/31(금)	건설/부동산	월간 건설부동산 뉴스레터
7/31(금)	건설/부동산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불허가처분 등을 취소하는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7/31(금)	유라시아	러시아의 대(對)외국인 및 외국기업 규제 강화에 따른 유의사항 및 대응 전략: 예금 반환 제한, 전략적 투자 통제 확대 및 고급전문인력(HQS) 고용 요건 개정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남형기 | 고문

[프로필보기](#)



윤형중 | 고문

[프로필보기](#)



김건훈 | 수석전문위원

[프로필보기](#)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이승상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